

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5]

제조업자 등이 기록·관리해야 하는 서류의 보존 기간(제8조제2항 관련)

대상 서류	기간
1. 형식승인 관련 신청 서류	
가. 형식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	10년
나. 형식승인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	5년
다. 형식승인서 재발급신청서 및 관련 서류	5년
라. 형식승인변경신청서 및 관련 서류	5년
2. 계량기 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	5년
3. 계량증명을 위한 증명서 및 관련 서류	5년
4. 계량기 자체수리 내용 및 검사기록	5년